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
----------	---

제출년월일 : 1999. 4. 15.
제 출 자 : 사 하 구 청 장

1. 제안이유

고용직공무원 신규임용 연령이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낮게 규정되어 있어 연령의 현실화로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업무수행능력에 적합한 연령으로 조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14세이상 20세까지”에서 부산광역시사하구 인사규칙 제8조에 의한 기능직 8등급이하 신규임용연령인 “18세이상 35세까지”로 개정(안 제3조).

3. 관계법령

-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
- 나. 부산광역시사하구인사규칙 제8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은 18세이상 35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신규임용) ①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은 별표의 직명에 의한다.</p> <p>②고용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미리 업무수행능력 기타 적격성을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방법은 임용권자가 정한다.</p> <p>③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은 14세이상 20세까지로 한다.</p>	<p>제3조(신규임용)①</p> <p>②</p> <p>③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은 18세이상 35세까지로 한다.</p>